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규정<개정 2021.8.24.>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01. 5. 8.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07.12.11.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10. 7.20.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14. 2.18.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15.12. 8.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16. 5.18.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21. 8.24.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글로벌평생교육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창학정신에 따라 사회구성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그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 및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1..2021.8.24.>
- 제2조(명칭) 글로벌평생교육원의 명칭은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07.12.11..2021.8.24.>
- 제3조(소재지) 평생교육원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8.,2021.8.24.>
 - 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 2.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 대구캠퍼스
- 제4조(설치과정) 평생교육원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둔다.<개정 2007.12.11.,2021.8.24.>
 - 1. 일반과정(교양 및 취미교육, 봉사교육, 전문가교육, 직업준비 및 재교육, 위탁교육)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
 - 3. 기타 평생교육에 필요한 과정
- 제4조의2(학점은행제 운영)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평생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12.11..2021.8.24.>
- 제5조(강좌 개설 및 정원) 설치과정내의 분야별 강좌 개설 및 강좌별 정원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12.11>
- 제6조(수업) 평생교육원의 수업은 주간, 야간 및 계절로 나누어 실시한다.<개정 2021.8.24.>

제2장 조직

- 제7조(원장) ①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우리 대학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21.8.24.>
 - ② 원장은 평생교육원을 대표하며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8.24.>

- 제8조(연구원) ①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7.12.11..2021.8.24.>
 - ② 원장은 석사학위 이상인 자를 연구원으로 임용하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그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5.8.,2007.12.11.,2021.8.24.>
- 제9조(행정실) 평생교육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0. 2. 22.,2021.8.24.>

제3장 학습등록 및 학습비<개정 2010. 7.20.>

- 제10조(등록시기) 평생교육원의 등록시기는 해당 학습과정의 수업시작일 하루 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강좌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이 등록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12.11.,2016.5.18.,2021.8.24.>
- 제11조(학습자격) 학습등록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 학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7.20.>
- 제12조(학습신청서의 제출) 평생교육원에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20..2021.8.24.>
- 제13조(선발절차) 평생교육원의 학습자선발은 각 과정별로 원서접수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0.7.20..2021.8.24.>
- 제14조(학습비) ① 학습자는 매학기 등록시에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7.20.>
 - ② 학습비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0. 2. 22·2007.12.11.· 2010.7.20.,2016.5.18.>
 - 1. 학점은행제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학습비 반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개정 2021.8.24.>
 - 2. 일반과정 및 기타 과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개정 2021.8.24.>

제4장 학습연한, 교육과정 및 수료<개정 2010. 7.20.>

- 제15조(학습연한) 평생교육원의 학습연한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학습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2.11.·2010.7.20., 2021.8.24.>
- 제16조(교육과정)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2.11.,2021.8.24.>
- 제17조(이수교과목) 과정별 이수교과목은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2.11.,2021.8.24.>
- 제18조(학업성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출석 및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서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개정 2015.12.8.>

- 제19조(수료증 및 자격증 수여) 각 강좌별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을 수여한다.<개정 2000. 2. 22·2007.12.11.,2021.8.24.>
- 제20조(수료증명서 발급) 각 강좌별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7.12.11.,2021.8.24.>

제5장 학습자 지도, 장학금 및 학습비<개정 2010. 7.20.>

- 제21조(학습자 지도) 평생교육원의 학습자는 학습활동 전반에 관하여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7.20.,2021.8.24.>
- 제22조(장학금) 평생교육원의 학습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및 평생교육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7.20..2021.8.24.>
- 제23조(포상)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학습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0.7.20.>
- 제24조(징계) ① 학습자가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7.12.11.·2010.7.20.,2021.8.24.>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6장 공개강좌

- 제25조(공개강좌) ① 평생교육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8.24.>
 -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8.24.>

제7장 운영위원회

- 제26조(위원회의 설치)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2.11.,2021.8.24.>
- 제2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원장, 기획처장 및 총무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14.2.18..2021.8.24.>
 -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2.18.>
- 제2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11>
 - 2. 교과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기타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7.12.11.,2021.8.24.>
- 제29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회계<신설 2021.8.24.>

- 제30조(회계연도) 평생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개정 2021.8.24.>
- 제30조의2(예산편성) 평생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우리 대학교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신설 2021.8.24.>
- 제30조의3(예산 및 결산) 평생교육원의 회계업무는 우리 대학교 예산 및 회계업무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1.8.24.>

제9장 기타<개정 2021.8.24.>

- 제31조(위탁교육) 과정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 제32조(원우회) ① 학습자의 자치기구로 원우회를 둘 수있다.<신설 2000. 2. 22, 개정 2010.7.20>
 - ② 원우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0. 2. 22>
- 제33조(시행세칙 등) 원장은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 또는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07.12.11>

부 칙(1993, 12, 14)

- 제 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준용규정) 학기, 수업일 등에 관한 사항은 영남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 제 3조(세칙의 제정)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 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4. 10. 11)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199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13)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9.26)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199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22)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200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8.24.>

글평교 제 호

수 료 증

성 명

0000 년 00 월 00 일생

위 사람은 본 원 소정의 과정(과정)을 이수

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 이수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이수시간 : 00시간

0000 년 00 월 00 일

영남대학교 글로벌평생교육원장(학위명 성명)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1.8.24.>

글평교 제 호

수 료 증

성 명

0000 년 00 월 00 일생

위 사람은 본 원 소정의 과정(과정)을 이수

하였음을 인정함.

· 이수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ㆍ 이수시간 : 00시간

0000년 00월 00일

영남대학교 글로벌평생교육원장(학위명 성명)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0000 년 00 월 00 일

영 남 대 학 교 총 장 (학위명 성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8.24.>

글평교 제 호

수 료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

과 정:

이 수 기 간 : 0000 년 00 월부터

0000 년 00 월까지

이 수 시 간 : 000 시간

위의 사실을 증명함

0000 년 00 월 00 일

영남대학교 글로벌평생교육원장(학위명 성명)

[별지 제3호 서식] 삭 제<2021.8.24.>

글로벌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지침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10. 6. 1.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14. 5.27.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15.11.12.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16. 4. 7.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17.11.30.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18.06.15.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19.12.17.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20.08.13. 글로벌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21.09.03.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규정 제4조의 2(학점은행제 운영)에 근거하여 우리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한다)의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2021.9.3.>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관련 운영규정 및 우리대학교 학칙의 제18장(학점은행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원의 학점 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9.15., 개정 2014.5.27.>
-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의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습자'라 함은 교육원의 학점은행제에 등록을 하여 교과목 강의를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 2. '학습과목'이라 함은 학점은행제에 개설된 개별 교과목을 말한다.

제2장 교원 및 강사

- 제4조(교원 및 강사 활용)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의 학습과목 담당 강의는 우리 대학교 교원 및 교육원 강사(이하'강사'라 한다)를 활용한다. <개정 2019.12.17.>
- 제5조(강사 임용) ① 교육원의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별표4]을 준용한다.<개정 2019.12.17.>
 - ② 강사는 교육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12.17.>
- 제6조(구비서류) 강사 임용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력서 1부
 - 2. 학력증명서 각 1부(학사, 석사, 박사 등)

- 3. 강의경력 증명서 1부
- 4. 주민등록등(초)본 1부
- 5. 통장사본 1부 <개정 2014.5.27.>

제7조(강사 자격)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부합되는 자 <개정 2009.9.15., 2016.4.7.>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별표4]에 부합되는 자 <개정 2019.12.17.>

제8조(강사 복무)

- ① 강사는 강의에 충실하여야 한다.
- ② 무단 결강 등 강의 불성실로 인하여 학습자들의 불만 및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습자 선동, 교육원의 운영에 저해되는 활동 및 교육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3.>

제9조(출강부 날인) 교원 및 강사는 강의 수업 시작 전에 반드시 출강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강의 평가) ① 강의평가는 매 학기 중간시험 이후 기말시험 이전에 실시한다. <개정 2016.4.7.>
 - ② 강의평가 절차는 (별표 2)의 '강의평가 설문지'를 학습자가 무기명으로 작성하고, 교육원의 행정실에서 수합하여 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5.27.>
 - ③ 교원 및 강사는 강의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 ④ 강의평가결과 평가점수가 75% 이하(최근 2개 학기 합산 평균점수) 이거나, 강의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원장은 해당 교·강사를 다음 학기 강사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료) ① 강사료는 전업 및 비전업 강사의 구분을 하지 않으며, 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강사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강의형태별 강의시수 책정기준
 - 이론과목 : 이론시수와 동일
 - 실습[실기]과목: 이론시수+(실습[실기]시수×1/2) <개정 2015.11.12.>
 - ③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방문강의료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 제12조(주임교수) ① 학점은행제의 학습자 지도 및 상담 등 학사관리의 원활화를 위하여 전공 과정에 교육원 자체로 원장이 임용하는'주임교수'명칭의 자체 보직을 둘 수 있다.
 - ② 주임교수에 관하여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수 업

제13조(수업) ① 수업시간은 50분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100분)을 1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학점을 인정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수업시간 단위를 75분

또는 100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4.7.>

- ② 각 학습과목은 학기 초에 배부된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개정 2014.5.27.>
- ③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4.7.>
- ④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4.7.>
- ⑤ 원장은 학습자 모집 시에 수업시간표를 편성·공고하여야 하며,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고한다. <신설 2016.4.7.>
- ⑥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별 총 정원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6.4.7.>
- ⑦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의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른다.<신설 2016.4.7.>
- 제14조(강의계획서) 교원 및 강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학습자 모집 전까지 강의계획서(과제명 기입)를 작성하여 교육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이를 학습자 모집 시에 공고한다. <개정 2015.11.12., 2016.4.7.>
 - 1. 과목정보 : 학습과목명, 교원 및 강사명, 수업목표, 교재, 수업 방법(강의, 토론, 실습등) 및 특이사항 등
 - 2. 평가요소 : 시험, 출석, 수업 참여도, 퀴즈 등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
 - 3. 주차별 수업 주제, 내용 등
 - 4. 평가기간 :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 시기
 - 5. 과제물 제출 기간(과제물 부과 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입)
 - 6. 학점부여 : ()학점(()()()()년도 ()()월)
 - 7. 유의사항 등
 - ② 첫 수업시간에 학습과목의 담당 교원 및 강사가 강의계획서를 배포 및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16.4.7.>
- 제15조(폐강 기준) 학습과목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폐강대상과목 중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 제16조(휴강 및 보강) ① 삭제 <2016.4.7.>
 - ① 교원 및 강사는 공적 또는 사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휴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 강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4.7.>
 - ② 교원 및 강사는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예상 못한 휴강을 할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한다. <개정 2014.5.27., 2016.4.7.>
 - ③ 교원 및 강사는 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 자에게 알려야하며, 원장은 휴·보강 계획을 공고한다. <신설 2016.4.7.>
 - ④ 교원 및 강사는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한다. <신설 2016.4.7.> 제17조(출석) ① 각 학습과목의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매 교시마다 출결사항을 기록·유지하고, 학습과정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출석부를 교육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6.4.7.>

- ② 각 학습과목의 담당교수는 결석이 과한 학습자의 명단을 교육원에 통보하고 지도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총 수업시간의 10분의 8 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습자는 그 학습과목의 시험에 응시할수 없으며, 응시하여도 해당 학습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출석률=출석시간/총수업시간 × 100) <개정 2015.11.12.>
- ④ 출석성적은 학기 초에 성적비율을 산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산출해야 한다. 다만,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⑤ 지각, 조퇴 3회시 결석 1시간으로 처리한다.
- ⑥ 학습자가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한 경우는 입대전의 출석률로 출석성 적을 인정한다.
- ⑦ 출석점수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4.5.27.. 2018.6.15.>

수업	30시수		30시수 45시수 48시수		60	시수	75시수		80시수			
지수 결석 시수	출석 점수	출석률 (%)	출석 점수	출석률 (%)	출석 점수	출석률 (%)	출석 점수	출석률 (%)	출석 점수	출석률 (%)	출석 점수	출석률 (%)
0	10	100	20	100	20	100	20	100	20	100	20	100
1	9	97	19	98	19	98	19	98	19	99	19	99
2	8	93	18	96	18	96	19	97	19	97	19	98
3	7	90	17	93	17	94	18	95	18	96	18	96
4	6	87	16	91	16	92	18	93	18	95	18	95
5	5	83	15	89	15	90	17	92	17	93	17	94
6	4	80	14	87	14	88	16	90	17	92	17	93
7	0		13	84	13	85	15	88	16	91	16	91
8			12	82	12	83	14	87	16	89	16	90
9			10	80	10	81	13	85	15	88	15	89
10			0		0		12	83	15	87	15	88
11							11	82	14	85	14	86
12							10	80	13	84	14	85
13							0		12	83	13	83
14									11	81	12	82
15									10	80	11	81
16									0		10	80
17											0	

- *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함
- *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함

- 8 지각 및 조퇴 처리는 단위 수업시간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개정 2015.11.12.>
- ⑨ 수업 중 담당 교원 및 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6.4.7.>
- ⑩ 출석부에 휴강일 및 보강일을 기입한다. <신설 2016.4.7.>
- ① 원장은 학기 초 학습과목별 성적비율을 산정하고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 야 한다. 단,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6.4.7.>
- 제18조(출석인정) ①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총 수업시간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7.. 2016.4.7.. 2017.11.30.. 2019.12.17.>
 - 1.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3촌 이내의 친족의 결혼 및 사망
 -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사람
 - 3.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한 사람
 - 4. <삭제 2019.12.17.>
 - 5. <삭제 2017.11.30.>
 -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018.6.15., 2019.12.17.>
 - 가. 국가 및 국가공인 자격시험(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 나. 국가 대회출전(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 다. 입시, 진학, 진급, 취업 관련 면접 및 시험(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 라. 기업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된 학습자의 사전에 계획된 국내외 출장 및 근무 명령(관련 증빙서류 및 재직증명서 제출시)
 - 마. 제외사항: 단합이나 친목, 보상적 차원의 목적인 워크숍, 단합대회, 체육대회, 여행, 봉사활동 등, 통상적 업무의 연장인 당직 근무 또는 초과근무
 - 8. 기타 상기 1~7호에 준한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사유
 - ② 담당 교원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상황을 학습과정 종료 직후 집계하여 출석률이 총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신설 2016.4.7.>
- 제18조의2(시험 부정행위 조치) ① 원장은 담당 교원 및 강사로 하여금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담당 교원 및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1. 학습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출석
 - 2. 시험 중 부정행위
 - 3. 기타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행위

[본조신설 2016.4.7.]

- 제19조(성적평가) ①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출석성적 및 과제물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등의 과목은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평가성적이 60점 미만이거나,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학습자의 성적분포 비율은 90점 이상 20% 이하, 80점 이상(90점 이상 포함) 60% 이하이여야 하며, 10명 미만의 수업 등 부득이하게 성적분포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원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학습과목 담당교수는 그사유를 명시한 성적분포 기준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 ④ 정기평가 감독교수는 평가시간에 수험생의 좌석을 정돈한 후 학습자 본인을 확인 후 시험 답안지에 서명하고 해당시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감독하여야 한다.
 - ⑤ 시험 중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답안지에 색연필로 "부정행위" 표시와 부정행위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감독교수가 서명 날인하여 별도로 행정실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 ⑥ 정기평가 결시자 및 추가시험 미 응시자는 성적평가를 하지 않는다.
 - ⑦ 장애 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한다.
 - ⑧ 당해 학습과목의 취득점수가 만점의 10분의 6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평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개정 2014.5.27.>

취득점수	평점	OIN ILU
95점 이상	4.50	A+
90~94점	4.00	А
85~89점	3.50	B+
80~84점	3.00	В
75~79점	2.50	C+
70~74점	2.00	С
65~69점	1.50	D+
60~64점	1.00	D
60점 미만	없음	F

- ⑨ 채점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채점 전에 채점기준표, 모범답안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문항별로 정확하게 채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6.4.7.>
- ① 수업계획서에 따라 해당주차에 과제물을 부과하고, 과제물 평가의 결과는 성적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 ①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 등으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그 이 전까지의 정기평가 및 과제물 등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개정 2015.11.12.>

제20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개정 2014.5.27.>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의 취득한 성적

- 2.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 3.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 4.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5. 기타 부정행위 등으로 취득한 성적
- 제21조(추가시험) 학습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공적 결석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개정 2014.5.27., 2016.4.7.>
- 제22조(성적열람 및 정정) 교부 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성적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이후의 정정요청은 일체 응하지 않는다.<개정 2014.5.27.>
- 제23조(자격증 수여) ① 총장 명의의 자격증 취득 학습과목을 수료하고 소정의 검정기준을 거친 자에게 총장명의의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총장 명의의 자격증 취득 대상 학습과목 및 검정기준 등 자격증 관리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학습비

- 제24조(학습비 책정) 학습비 책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6.1>
- 제25조(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 정 2009.9.15., 2010.6.1., 2016.4.7.>

[제목개정 2016.4.7.]

제5장 학습자

- 제26조(등록) ① 교육원의 학점은행제 학습 희망자는 해당 학습과정의 수업 시작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를 납부하고, 학습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2016.4.7.>
 - ② 수강신청은 매 학기 24학점, 년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5.27.>
 - ③ 학습과정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1학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1.12.>
 - ④ 학습비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의거 학습자가 학습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8.6.15.>
- **제26조의 2(학적관리)** 원장은 학습과정 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하여 관리하고 영구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6.4.7.]

제26조의 3(학습상담) 학습과정 교·강사 및 담당자는 학습자의 학습설계, 진로지도 등을 위하여 학습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상담일지를 관리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8.6.15.]

- 제27조(장학금) ① 원장은 학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28조(포상) 원장은 교육원 학습자로서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교육원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 제29조(징계)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 1. 교육원의 시설 및 집기 등 각종 기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 2. 학습방해 및 폭력행위를 한 자
 - 3. 원장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
 - 4. 기타 교육원의 학습자로서 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제30조(학생증) 수강 중인 학습자에게는 우리 대학교 총장명의로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7.>
- 제31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이나 우리 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7., 2016.4.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1월 6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09.9.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9월 15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0.6.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6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4.5.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2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6.4.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30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8.6.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6월 15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9.12.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16.4.7.>

<별표2>

강의평가 설문지(일반과목)

•	八	행	일	:		년	월	일
•	과	목	명	:				
•	교	수	명	:				

이 설문은 강의의 질적 향상 및 학습자들의 면학분위기 제고를 위해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강의평가결과는 비공개 자료이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					
문 항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10	8	6	4	2	
(1) 강의의 수준이나 난이도는 적정하였다.	А	В	С	D	Е	
(2) 강의내용이 학생들의 이해 및 응용능력을 향상시켜 주었다.	A	В	С	D	E	
(3) 담당교수는 강의내용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였다.	А	В	С	D	Е	
(4) 강의진행 속도는 적절하였다.	А	В	С	D	Е	
(5) 담당교수는 충분한 지식과 성실한 준비로 강의에 임했다.	А	В	С	D	Е	
(6)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었다.	A	В	С	D	Е	
(7) 학습과제는 수업내용을 보충하거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A	В	С	D	E	
(8) 강의내용이 과제물 및 실습에 적절히 반영되었다.	А	В	С	D	E	
(9) 강의는 수업계획서, 강의목표 대로 진행되었다.	А	В	С	D	Е	
(10) 수업은 전체적으로 유익하였다.	A	В	С	D	Е	

※ 이 수업에서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들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강의평가 설문지(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	八	행	일	:	 년	월	일
•	과	목	명	:			
•	亚	수	명	:			

이 설문은 강의의 질적 향상 및 학습자들의 면학분위기 제고를 위해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강의평가결과는 비공개 자료이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점					
문 항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10	8	6	4	2	
(1) 실습내용은 전문적이며 실습과제물은 적절하였다.	A	В	С	D	Е	
(2) 실습이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А	В	С	D	E	
(3) 실습은 해당분야의 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А	В	С	D	Е	
(4) 강의 내용과 실습 내용은 과목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 다.	Α	В	С	D	Е	
(5) 강의 내용과 실습 내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Α	В	С	D	E	
(6) 이 강의는 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켰고, 학업에 대한 동기 유발의 계기가 되었다.	А	В	С	D	Е	
(7) 담당교수는 실습 전에 선행해야할 내용에 대하여 잘 설명하였다.	А	В	С	D	Е	
(8)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었다.	А	В	С	D	Е	
(9) 담당교수는 충분한 지식과 성실한 준비로 강의에 임했다.	А	В	С	D	Е	
(10) 수업은 전체적으로 유익하였다.	А	В	С	D	Е	

※ 이 수업에서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들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별표3> <개정 2010.6.1.><삭제 2016.4.7.>

[별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 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 4 조 제 2 항 제 2 호 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 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 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별표4]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신설 2019.12.17.>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8. 23.] [교육부고시 제2019-192호, 2019. 8. 23.,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9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 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강사"란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학습자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교육경력"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에서의 교육경력을 말한다.
- 3. "연구실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을 말한다.
 - 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등에서 연구한 실적
 - 나. 산업체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 4. "민간산업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 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5.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의 공공기관
 - 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 **제3조(강사의 자격)** ①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담당할 학과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교수에 해당하는 자
 - 2.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4년 이상인 자
 - 3.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자
 - 4.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5.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6.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7. 대학에서의 강사 등 교원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학습과정은 [별표1]에 해당할 경우 강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 ① 연구실적의 환산은 [별표2]를 따르고,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및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체능 등 특수분야는 [별표3]을 기준으로 연구실적을 환산할 수 있다.
- 제5조(구비서류)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 2. 학력증명서
 - 3. 경력증명서
 - 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제6조(평가인정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용한 강사가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강사가 포함된 학습과정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임용 등)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 교육훈 련기관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그 임용기간에 면직 및 해촉할 수 있다.
 - 1. 제5조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
 -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 3.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 4. 임용 시의 자격기준을 상실한 자
 - 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강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강사를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강사를 면직 또는 해촉한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 정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192호, 2019. 8.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글로벌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장학금 지급 기준

사회교육원장 품의 2007.12.5.

사회교육원장 품의 2012. 3. 8.

사회교육원장 품의 2014. 3.19.

사회교육원장 품의 2016. 5.12.

사회교육원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17. 4.28.

글로벌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21. 9. 3.

글로벌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22. 7.13.

글로벌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23. 7.26.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영남대학교 글로벌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의학점은행제 운영지침 제27조(장학금) ②항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장학금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2.,2021.9.3>
- 제2조(적용범위)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선정과 지급에 관하여 국가기관 또는 장학단체에 서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본 기준을 적용한다.
- 제2조2(장학 구분) 본 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교내장학금 : 본원회계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 2. 교외장학금 :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기탁하는 장학금

[본조 신설 2016.5.12.]

- 제3조(장학종별 선발기준 및 지급내역)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특별장학금 :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은 해당자에게 본인 수강료 범위 이내에서 정액 또는 정율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3.>
 - 1. 본원의 발전 및 홍보에 특별히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학습자
 - 2. 학습자 유치와 관련하여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3. 품행이 단정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학습자
 - 4.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 ② 기여장학금 : 국가 또는 학교에 그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 당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 하는 장학금 <신설 2016.5.12.>
 - ③ 진흥장학금 : 특정 분야의 특기를 지닌 유능한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또는 특정 입학자에게 면학을 권장하고자 지급하는 장학금 <신설 2016.5.12.>
 - ④ 교외장학금 : 외부의 장학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기탁될 경우 지급한다.
- 제3조2(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 신설 2016.5.12.]<개정 2017.4.28.,2022.7.13.,2023.7.26.>

제3조3(장학금신청자 구비서류)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 장에게 장학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5.12.]

- 제4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수혜사유가 발생한 당해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5.12.>
- 제5조(이중수혜 제한) 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2.>
 - 1. 학습비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6.5.12.>
 - 2. 원장이 장학상 필요하여 인정한 경우 <신설 2016.5.12.>
- **제6조(장학금 수혜자격 상실)**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할 경우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부칙(2007.12.5.)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2.)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28.)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산학장학금 기준은 2017학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학습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9.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7.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7.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신설 2016.5.9.> <개정 2017.4.28.,2022.7.13., 2023.7.26.>

T1 =	1753	4 H. 7 F	장학금 지급내역			
장학금종류		선 발 기 준	급액	기간	· 비고	
	교직원 복지 장학금	우리 대학교 교직원(비정규직, 퇴직자 포함)인 본인으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거 지급	학습비의 30%	1개 학기		
기여 장학 금	국가유공 장학금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신청에 의거 지급 1. 국가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자녀 : 직전학기 학업성 적 실점수평균이 70점 이상인자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금액 * 본인 : 학습비의 100% (본원재원) * 자녀 : 학습비의 100% (본원재원 50% + 국가보훈청재원 50%)	1개 학기	단, 국가유공자 자 녀의 경우 168학 점까지 지원 가능	
	리더십 장학금	전공별·학급별 기여자(대표 및 총무)로 서 교육원에 모범이 되고, 당해학기 12학 점 이상 수강 중이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과락없이 C(2.0) 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제외)에게 별도의 신청기 간에 신청에 의거 지급	학습비의 10%	1개 학기	① 하계, 동계학기 학습비는 제외 ② 학급별 10명 미만은 제외	
	군장학금	군인 또는 군무원 재직자로서 별도의 신 청기간에 신청에 의거 선정 지급	학습비의 20%	1개 학기	단, 재직자에 한해 적용(관련 증빙서 류 제출 필수)	
진 창 그	천마가족 장학금	본원에 학생의 가족(2촌이내 혈연관계-부 부, 형제, 자매 등)이 동시에 재학하고 있 는 경우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거 지급	학습비의 10%	1개 학기	대상자 각각 10% 지급	
	산학 장학금	본원이 지정한 기업(관)에 재직하며, 최초 수강학기에 12학점 이상 수강하는 자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거	학습비의 20%	1개 학기	단, 재직자에 한해 적용(관련 증빙서 류 제출 필수)	
卫5	기장학금	외부의 장학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기 탁된 경우 선발 규정에 의거 지급	각 외부장학 단체의 기탁금	지정 학기		

영남대학교 학칙

제정 1967.12.22. 교육(문교부) 인가 개정 1996. 8. 8. 교육부 인가 개정 2010. 1.27. 대학평의원회 개정 1968.12.26. 교육부 인가 개정 1997. 2.28. 교육부 인가 개정 2010.10.28. 대학평의원회 개정 1969.12.27. 교육부 인가 개정 1998. 2.27. 교육부 인가 개정 2010.12.29.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0.12.31. 교육부 인가 개정 1998. 3.24. 교무위원회 개정 2011. 1.19.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1. 4.17. 교육부 인가 개정 1999. 2. 2. 교무위원회 개정 2011. 2.2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1. 8.21. 교육부 인가 개정 1999. 8.31. 교무위원회 개정 2011. 7.1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1.10.21. 교육부 인가 개정 1999.10.12. 교무위원회 개정 2011.10. 7.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1.12.31. 교육부 인가 개정 2000. 2.22. 교무위원회 개정 2011.11.23.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2.12.26. 교육부 인가 개정 2000. 8.22. 교무위원회 개정 2012.11.30.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3.12.28. 교육부 인가 개정 2001. 2. 6. 교무위원회 개정 2013. 1.25.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5. 3. 8. 교육부 인가 개정 2001.11.27. 교무위원회 개정 2013. 7. 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5. 7.25. 교육부 인가 개정 2002. 2.14. 교무위원회 개정 2014. 2. 6.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6. 3. 1. 교육부 인가 개정 2002. 2.25. 교무위원회 개정 2014. 2.26.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7. 3.11. 교육부 인가 개정 2002. 3.19. 교무위원회 개정 2014. 6.12.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8. 1.30. 교육부 인가 개정 2002. 7.16. 교무위원회 개정 2014. 9.26.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9. 2.16. 교육부 인가 개정 2002. 8.27. 교무위원회 개정 2014.12.29.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3. 1.21. 교무위원회 개정 1979. 3.27. 교육부 인가 개정 2015. 2.12.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5. 3.27. 대학평의원회 개정 1979.11.16. 교육부 인가 개정 2003. 6.10. 교무위원회 개정 2003.12. 9. 교무위원회 개정 1980. 3. 4. 교육부 인가 개정 2015. 9.22.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0. 8. 6. 교육부 인가 개정 2004. 1.27. 교무위원회 개정 2016. 1.21.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4. 2.24. 교무위원회 개정 1981. 5.19. 교육부 인가 개정 2016. 5.19.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2. 9. 8. 교육부 인가 개정 2004. 6.22. 교무위원회 개정 2017. 4.11.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4. 3.16. 교육부 인가 개정 2005. 1.11. 교무위원회 개정 2017. 7.26.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4. 9. 7. 교육부 인가 개정 2005. 2.23. 교무위원회 개정 2018. 1.18.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5. 7.26. 교무위원회 개정 1985. 3.16. 교육부 인가 개정 2018. 8. 9.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5. 7. 5. 교육부 인가 개정 2005.10.11. 교무위원회 개정 2018. 8.29.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5.12. 6. 교무위원회 개정 1986. 2.28. 교육부 인가 개정 2019. 1.1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6. 9. 5. 교육부 인가 개정 2006. 2.24. 교무위원회 개정 2019.12. 5.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6.12.31. 교육부 인가 개정 2006. 9.12. 교무위원회 개정 2020. 1.21.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7. 9. 8. 교육부 인가 개정 2006.10.24. 교무위원회 개정 2020. 3.25.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7. 9.30. 교육부 인가 개정 2007. 1.15. 교무위원회 개정 2020.11.26.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7.11.17. 교육부 인가 개정 2007. 2.13. 교무위원회 개정 2021. 4.13. 대학평의원회 개정 1988. 3.17. 교육부 인가 개정 2007. 4.16.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1. 9. 3. 직권수정 개정 1988.12.30. 교육부 인가 개정 2007. 7.24.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1.11.25.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0. 3.17. 교육부 인가 개정 2007. 9.12.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2. 4.12.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1. 6.10. 교육부 인가 개정 2022. 6.10. 직권수정 개정 2007.11.1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1.10.23. 교육부 인가 개정 2022. 7.21.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8. 1.1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2. 2.24. 교육부 인가 개정 2008. 2.13.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2.11.28.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2.12.26. 교육부 인가 개정 2008. 4.14.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3. 3.31. 교육부 인가 개정 2008. 9.10.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3. 8.28. 교육부 인가 개정 2008.11.27.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4. 3.17. 교육부 인가 개정 2008.12.17.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5. 2.22. 교육부 인가 개정 2009. 3.25.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5. 6.20. 교육부 인가 개정 2009. 7.22. 대학평의원회 개정 1996. 2.28. 교육부 인가 개정 2010. 1. 6. 대학평의원회

제88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제89조(학생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89조의1 삭제<1988.12.30.>

제2절 장애학생지원<신설 2011. 2.24>

- 제89조의2(적용범위)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신설 2011. 2.24>
- 제89조의3(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11.2.24>
- 제89조의4(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계획 및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11.2.24.>

제18장 학점은행제<신설 2001.11.27.>

- 제90조(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 인정을 받은 자가 우리 대학교 총장이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1.11.27., 개정 2006.2.24.,2010.10.28.,2014.6.12.>
 - 1. 우리 대학교에서 해당 학위 전공과목 18학점 이상과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12학점을 포함한 총 84학점 이상 취득한자<개정 2010.10.28.,2014.6.12., 2020.11.26.,2021.9.3.>
 - 2. 학사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이후 우리 대학교에서 해당 학위 전공과목 18학점 이상 을 포함한 총 48학점 이상 취득한자<개정 2010.10.28..2014.6.12.>
 - 3. 삭제<2010.10.28.>
 - 4. 삭제<2010.10.28.>
 - ②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신설 2001.11.27, 개정 2010.10.28.,2021.9.3.>
 -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우리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11.27.. 개정 2010.10.28..2021.9.3.>
 - ④ 삭제<2011.1.19.>
 - ⑤ 삭제<2010.10.28.>
- 제90조의2(교육과정·수업·학적관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 학점은행제의 교육과정·수업·학 적관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5.19.>

- 제90조의3(유사전공 심의) 학점은행제와 관련한 유사전공 심의는 해당 대학 학부(과) 회의에서 각 학부(과) 교육과정과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간 유사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신 설 2018.8.9.>
- 제91조(학위수여) ① 제90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2.2.14.,2010.10.28.,2018.1.18.>
 -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수여 가능한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1.11.27, 개정 2002.8.27.,2003.1.21.,2010.10.28., 2014.6.12.,2018.8.9.>
 - 1. 우리 대학교 학부(과)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 공에 한한다.
 - 2. 전공명이 유사한 경우 유사전공 심의를 거친다.
 - ③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별표 2-2]의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18.8.9.>

제19장 산학협력단<신설 2004.1.27.>

- 제91조의2(산학협력단) ①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신설 2004.1.27.>
 - ② 산학협력단의 설치, 조직, 재산 및 회계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4.1.27.>
 - ③ 총장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4.1.27.>

제20장 계약학과<신설 2004.2.24.>

- 제91조의3(계약학과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4.2.24., 개정 2011.1.19.,2015.3.27., 2020.11.26.>
 - ②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제3조의 입학정원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40조의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11.1.19.. 개정 2015.3.27..2018.1.18..2020.3.25.>
 - ③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신설 2011.1.19., 개정 2015.3.27.>

제91조의4 삭제<2011.1.19.>

제91조의5 삭제<2011.1.19.>

제91조의6 삭제<2011.1.19.>

제91조의7 삭제<2011.1.19.>

제91조의8 삭제<2011.1.19.>

부칙(1999.10.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문과대학 동양어문학부와 인문사회학부로 입학한 재적생은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개정된 문과대학 한국학부, 동양어문학부, 인문학부 및 사회과학부에, 이과대학 의예과 재적생은 의과대학 의예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2.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재적생중 200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응용화학공학 부내 화학공학전공과 공업화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 여 1998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응용화 학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3.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재적생중 200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공학부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0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전자정보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0. 8.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2.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7.)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15조, 제33조, 제36조, 제39조, 제42조,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항의 단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제40조는 2002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제2조(학부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① 사회과학부 매체정보학전공과 자연과학부 물리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사회과학부 언론 정보학전공과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법학부 재적생은 2004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법학부 및 공법전공, 사법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2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개편된 법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③ 공과대학 섬유패션학부 및 동학부 섬유생산공정전공과 섬유소재가공전공 재적생은 개편 된 섬유패션학부 및 동학부 섬유생산공정전공과 섬유소재가공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공과대학 섬유패션학부 패션디자인전공과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섬유패션학부 의류패션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생활과학대

학 생활과학부 1학년 재적생중 의류패션전공 희망자는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개편된 섬유 패션학부 의류패션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④ 통상및경제학부 재적생중 경제학전공과 국제통상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경제금융학부 경제금융전공과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재적생은 개편된 금융통상학부군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⑤ 체육학부 재적생은 200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체육학부 체육학전공과 생활체육 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00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수학 또는 복학 하는 경우에는 개편된 체육학부 체육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⑥ 조형학부 재적생은 2003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조형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단, 조형학부 재적생이 2001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수학 또는 복학하는 경우에는 소속전공에 따라 개편된 미술학부와 디자인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며, 산업디자인전공과 형성디자인전공 재적생은 전공 재배정 결과에 따라 개편된 산업디자인 전공과 공예디자인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2. 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7.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8.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1.)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0조제1 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재적생은 2005학년 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200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개편된 전자정보공학부 전자전파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3. 6.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는 2003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학과 편입학생의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에 관한 특례) 의학과 편입학생의 의예과 선수 과목 이수에 필요한 학기는 제5조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의학과 편입학생이 의예과 선수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휴학한 기간은 제22조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2003.12.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제1항 및 제40조제1 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야간강좌개설부의 수학통계학부생은 이과대학 수학통계학부 통계학전공(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2. 상경대학 금융통상학부군의 재적생은 전공배정에 따라 경제금융학부와 국제통상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3. 생물자원학부 생물자원경영학전공 재적생은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생물 자원학부 생물자원경영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4학 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학부 식품산업경 영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4. 생활과학부 가정관리학 전공 재적생은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생활과학부 가정관리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4학년도 이후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생활과학부 가족주거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4. 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제1항 및 제40조제1 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한국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국사학전공, 문화인류학전공 재적생은 국어국문학과, 국사학과 및 문화인류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2.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재적생은 중어중문학과와 일어일문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3. 서양어문학부 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재적생은 불어불문학과와 독어독문학 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4. 인문학부 철학전공, 사학전공 재적생은 철학과와 사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5. 사회과학부 심리학전공, 사회학전공, 언론정보학전공 재적생은 심리학과, 사회학과 및 언론정보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6. 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 통계학전공 재적생은 수학과와 통계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7.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전공, 화학전공, 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재적생은 광전자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및 생화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8. 토목도시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재적생은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9. 야간강좌개설부 기계공학전공 재적생은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10. 재료금속공학부 재적생은 신소재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11. 전자정보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재적생은 전기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전자정보공학부 전자전파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및 정보통신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며,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전기공학과 및 개편된 전자정보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12. 야간강좌개설부 전자정보공학부 재적생은 2007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야간 강좌개설부 전자정보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년 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공과대학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13. 응용화학공학부 응용화학공학전공 재적생은 2007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응용화학공학부 응용화학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디스플레이화학공학전 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14. 정행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재적생은 정치외교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정행학부 행정학전공, 지역개발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행정학부 행정학전공과 지역개발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며,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정치외교학과 및 개편된 행정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15. 생물자원학부 식품산업경영학전공 재적생은 식품산업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16. 생물산업공학부 응용미생물학전공 재적생은 응용미생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생물산업공학부 식품가공학전공, 외식산업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식품외식학부 식품가공학전공과 외식산업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며,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응용미생물학과 및 개편된 식품외식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17. 디자인학부 공예디자인전공 재적생은 디자인학부 생활제품디자인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5. 1.11.)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는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2조(등록금반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65조는 2004학년도 제2학 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3제2항은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한다.

부칙(2005.10.11.)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1항 전자정보공학 부의 개편, 제3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중어중문학과 재적생은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중어중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중국언어문화학부 중어중문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2. 광전자물리학과 재적생은 물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3.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공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도시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건설환경공학부 재적생은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개편된 건설환경공학부 및 도시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4. 야간강좌개설부 건설환경공학부 재적생은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야간강 좌개설부 건설환경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개편된 건설환경공학부 및 도시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5.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전자정보공학부 재적생은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전기공학과 및 개편된 전자정보공학부(독립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05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전자정보공학부 재적생은 개편된 전자정보공학부(독립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6. 야간강좌개설부 법학부 재적생은 법과대학 법학부(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7. 행정학부 지역개발학전공 재적생은 2008학년도 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행정학부 지역개발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개편된 행정학부 지역및복지행정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8. 섬유패션학부 섬유생산공정전공, 섬유소재가공전공 재적생은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

는 경우에는 섬유패션학부 섬유생산공정전공, 섬유소재가공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개편된 섬유패션학부 섬유신소재설계전공, 섬유나노 소재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5.12.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24.)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정한다.
 - 1. 제18조제1항, 제35조의2, 제40조제1항 및 제91조의4제1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 2. 제42조의3 제2항은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계공학프로그램, 디스플레이 화학공학프로그램, 건축공학프로그램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 9.1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정한다.
 - 1.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40조제1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자연자원학부 및 식품외식학부 식품가 공학전공의 학위종별은 2006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문과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재적생은 개편된 중국언어문화학부(독립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개편된 중국언어문화학부 중어중문학전공 및 중국문화정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2. 영어영문학과(주간 및 야간) 재적생은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영어영문학과(주간 및 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7.1.15>
 - 3. 야간강좌개설부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재적생, 야간강좌개설부 건축공학과 재적생은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주간) 및 건축공학과(주간)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4. 자연자원학부 원예학전공, 조경학전공, 산림자원학전공 재적생은 원예학과,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5. 야간강좌개설부 가족주거학전공 재적생은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야간강 좌개설부 가족주거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7학년도 이 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가족주거학과(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6. 생활과학부 가족주거학전공(주간), 식품영양학전공재적생은 가족주거학과 및 식품영양

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생활과학부 재적생은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가족주거학과 및 식품영양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의과대학 유급제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유급으로 제적된 의과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이 학칙 제12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06.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재적생은 개편된 건축학부(독립학부)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공과대학 건축학부 전공 미배정자는 전공배정결과에 따라 건축학부(독립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2.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재적생은 전공 재배정결과에 따라 개편된 건축학부(독립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단, 2007학년도까지 졸업 하는 경우에는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3.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재적생은 전공 재배정결과에 따라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전 공, 기계설계전공, 첨단기계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단, 2007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4.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지역및복지행정학전공 재적생은 행정학과와 지역및복지행정학 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7. 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 학

칙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과 제58조제 2항의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9.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재적생은 건설시스템공학과와 환경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2. 신소재공학부 금속공학전공, 세라믹반도체재료전공 재적생은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신소재공학부 금속공학전공, 세라믹반도체재료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3. 식품외식학부 재적생은 식품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식품외식학부 식품가공학 전공 재적생은 식품학부 식품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4. 미술학부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재적생은 미술학부 한국회화전공, 회화전 공, 입체미술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8.1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재적생은 영어영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며, 영어 영문학부 영어번역전공 재적생은 영어영문학부 영어번역전공에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본인 희망에 따라 영어영문학과로 전공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 2. 전자정보공학부(독립학부)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재적생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0.10.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생물학과 재적생은 생명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2.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디스플레이화학공학전공 재적생은 2013학년도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디스플레이화학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경우에는 화학공학부 화학 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1.7.14>
- 3. 원예학과 재적생은 원예생명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4. 조형대학 재적생은 디자인미술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5.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생활제품디자인전공 재적생은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디자인학부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로 배정한다.
- 6. 천마인재학부 재적생은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개편된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과 의생명과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1. 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 학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40조 제1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개정 이후 식품산업경영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경영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2011. 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시에 반환금액 적용은 학칙개정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제적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0.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23.)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제36조 및 제39조의 개정 규정상의 학점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섬유패션학부 각 전공 재적생 중 2014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14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과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하는 재적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섬유신소재설계전공 재적생은 공과대학 융합섬유공학과
 - 나. 섬유나노소재전공 재적생은 공과대학 나노메디컬유기재료공학과
 - 다. 의류패션전공 재적생은 생활과학대학 의류패션학과
 - 2. 중국언어문화학부 각 전공 재적생 중 2014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14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과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하는 재적생 및 전공 배정 전에 휴학한 재적생이 2012학년도 이후에 복학하여 전공 배정을 받는 재적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중어중문학전공, 중국문화정보전공 재적생은 문과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중어중문 전공
 - 나. 중국어통번역전공 재적생은 문과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중국어통번역전공
 - 3. 기초교육대학 천마인재학부 의생명과학전공 재적생은 졸업까지 변경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2.11.30.)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정한다.
 - 1.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55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재적생은 체육학부 체육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희망에 따라 무용학전공으로 전공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 2.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 재적생은 인문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 재적 생은 자연자율전공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법과대학 존속기간 등) ① 법과대학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유지한다.
 - ② 법학부의 졸업학점 축소로 인한 졸업유예는 2012학년도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승인하되, 2014년 2월까지 졸업하여야 한다.
 - ③ 법학부 재적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3. 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4.)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1조의2부터 제1의4까지의 규정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2. 6.)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기초교육대학 군사학과로 입학한 재적생은 정치행정대학 군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4. 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6.1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정한다.
 - 1. 제2조 제1항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 제90조는 2014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9.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중국언어문화학부 중어중문전공, 중국어통번역전공, 국사학과, 사학과, 화학과, 정보통 신공학과,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나노메디컬유기재료공학과, 조경학과, 산림자원 학과, 미술학부 한국회화전공, 회화전공, 입체미술전공, 음악학부 작곡전공, 피아노전 공, 관현악전공, 국악전공,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과학전공 재적생 중 2018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전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18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과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재적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된 학과 또는 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재적생은 추후 전공배정 결과에 따른 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8.8.9.>
- 가. 중국언어문화학부 중어중문전공, 중국통번역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중국언어문화학 과
- 나. 국사학과. 사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역사학과
- 다. 화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화학생화학부 화학전공
- 라. 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모바일정보통신공학과
- 마.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재적생은 전공 재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된 화공시스템 전공 또는 IT·에너지화공전공
- 바. 나노메디컬유기재료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화학공학부 고분자・바이오소재전공
- 사. 삭제<2018.8.9.>
- 아.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산림자원및조경학과
- 자. 미술학부 한국회화전공, 회화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회화전공
- 차. 미술학부 입체미술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트랜스아트전공
- 카. 음악학부 작곡전공, 국악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음악과
- 타.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피아노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기악과
- 파.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과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이과대학 화학생화학부 생화학전 공
- 2. 상경대학 경영학부 재적생은 변경된 경영대학 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15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상경대학 경영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3. 식품학부 식품공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식품공학과에, 외식산업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외식산업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4.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모바일영상디자인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시각디자인학과 에,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산업디자인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5. 음악학부 성악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성악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6.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재적생 중 2024년 2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및복지행정학과 또는 새마을국제개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24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은 새마을국제개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18.8.9.>

부칙(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는 201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1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학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

우 제43조제2항에 따라 졸업 및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2015. 3.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자연자원대학 각 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생명응용과학대학 각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16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전 자연자원대학 각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2. 자연자원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외식산업학과 재적생은 생명응용과학대학 식품자원 경제학과, 외식산업학과로 재적하되 2022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은 변경된 식품경제외식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3. 모바일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정보통신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14. 9.26. 개정 학칙의 부칙 제2조제1호 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개정 학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4.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생명공학부 미생물생명공학전공, 생명공학전공 재적생중 2022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전 학과 또는 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22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된 학과 또는 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생명공학부 재적생은 전공 배정 결과에 따라 각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가. 불어불문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유럽언어문화학부 프랑스어문전공
 - 나. 독어독문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유럽언어문화학부 독일언어문화전공
 - 다. 생명공학부 미생물생명공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생명응용과학대학 생명공학과
 - 라. 생명공학부 생명공학전공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생명응용과학대학 생명공학과 또는 의생명공학과

부칙(2016, 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19.)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정한다.
 - 1. 제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1항의 [별표 2-1]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90조의2는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이과대학 각 학부(과) 재적생은 변경된 자연과학대학 각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17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이과대학 각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2.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전기공학과(주간, 야간),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각 학부(과) 재적생은 변경된 기계IT대학 각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17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공과대학 각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3.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IT·에너지화공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화학공학부 융합화학공학전 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4. 공과대학 융합섬유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파이버시스템공학과로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17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융합섬유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5. 상경대학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전공(주간, 야간) 재적생 중 2020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전공(주간, 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20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은 변경된 무역학부 무역학전공(주간, 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6. 기초교육대학 자연자율전공학부 재적생 중 2017년 2월까지 전공배정을 받지 못하는 재적생은 자율전공학부 전공(학과) 배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입학 당시 전공배정이 가능한 학부(과)로 소속하도록 한다. 다만, 자율전공학부 전공(학과) 배정에 관한 내규 제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7. 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26.)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정한다.
 - 1. 제4조의3제1항제1호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58조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9.)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 우리 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학습자는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우리 대학교 학점은행제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과정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명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18, 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와 제58조의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유급제도 시행에 관한 적용례) 이 개정 학칙에 따라 시행하는 약학대학 유급제도는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3.25.)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3제2항은 2021 년 3월 1일부터, 제5조 제1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0.11.26.>
- 제2조(약학대학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개정 학칙에 따라 변경되는 약학대학 수업연한 규정은 2022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3조(약학대학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특례)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68호, 2018.7.31.>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에 한정하여 같은 영 제25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학대학 전공 교육과정(4년)을 이수할 학생을 별도로 선 발하고, 그 정원은 70명으로 한다.

부칙(2020.11.26.)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42조의 개정 학칙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자연과학대학 화학생화학부 재적생 중 2024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전 자연과학대학 화학생화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재적생은 변경된 자연과학대학 화학생화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2. 생명응용과학대학 산림자원및조경학과 재적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3학년 및 4학년 재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생명응용과학대학 산림자원 학과 또는 조경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나. 2021년 3월 현재 1학년 및 2학년 재적생은 산림자원및조경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위 학생이 3학년으로 진급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생명응용과학 대학 산림자원학과 또는 조경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생명응용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또는 조경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3. 디자인미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트랜스아트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디자인미술대학

회화과, 트랜스아트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미술학부 재적생은 입학 시 선택한 전공에 따라 변경된 디자인미술대학 회화과 또는 트랜스아트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4. 야간강좌개설부 경제금융학부, 무역학부, 경영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무역학부, 경영대학 경영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5. 2021년 3월 현재 야간강좌개설부 재적생 중 2024년 2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 경전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 또 는 수학하는 재적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야간강좌개설부 국어국문학과 재적생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 나. 야간강좌개설부 전기공학과 재적생은 기계IT대학 전기공학과
 - 다. 야간강좌개설부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재적생은 정치행정 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부칙(2021. 4.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 학칙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9. 3.)

제1조(직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 수정)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년 4월 13일자로 개정된 제3조 및 제40조의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1. 기계IT대학 자동차기계공학과 재적생은 개편된 기계IT대학 미래자동차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2. 기계IT대학 로봇기계공학과 재적생 중 2025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변경 전 기계IT대학 로봇기계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재적생은 변경된 기계IT대학 로봇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한다.
- 3.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 재적생 중 2025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주거환경학과 또는 가족주거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25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과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하는 재적생은 변경된 주거환경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4. 제1호에서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2028년 8월까지 기계IT대학 자동 차기계공학과, 로봇기계공학과,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로 각각 졸업할 수 있다.

[별표 2-2]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종별·해당 전공

학 위 종 별	해 당 전 공
문학사	국어국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철학전 공, 사학전공, 심리학전공
이학사	수학전공, 생명과학전공
공학사	환경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 공, 정보통신공학전공
행정학사	행정학전공
경영학사	경영학전공
무역학사	무역학전공
체육학사	체육학전공
무용학사	무용학전공
디자인학사	시각디자인전공
음악학사	음악학전공, 성악전공

(별지 제3호 서식)

하저	제	=
악심	М	Q

학 위 기

성 명:

0000년00월00일생

위 사람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총장 (학위) ○ ○ (인)

학위번호 :영남대-학점-(연도)○○○-(일련번호)○○

학 위 증 명 서

성 명:

생년 월일:

전 공: 사회복지전공

학위등록번호 : 영남대-학점- -

학 위 명: 사회복지학사

학위취득일자 : .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91조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영 남 대 학 교



성 적 증 명 서

성명: 전공:사회복지전공 학위등록번호:영남대-학점-

생년월일: 학위취득일자: 학위명:사회복지학사

	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		
구분	학습과목명		ት점	이수년월
	이수기관 : 배움사이버평생회	교육원		
교양	현대인의정신건강	77	3	2011.06
교양	상담이론과실제	84	3	2011.10
교양	사이버심리학	82	3	2012.06
교양	인간관계론	74	3	2012.10
교양	청소년문화	81	3	2013.06
교양	평생교육론	85	3	2013.06
교양	교육심리학	83	3	2013.12
교양	리더십	83	3	2013.12
교양	아동발달	84	3	2013.12
일선	노인교육론	86	3	2013.12
	이수기관 : 영남대학교부설시	·회교육원		
교양	생활과세금	95	3	2011.07
교양	영화와문학	79	3	2011.07
교양	음악과생활	89	3	2012.01
교양	현대사회의화법	93	3	2012.01
교양	결혼과가족	91	3	2012.07
교양	생활과광고	86	3	2012.07
교양	상담심리학	92	3	2013.01
교양	생활법률	88	3	2013.01
교양	건강관리	96	3	2013.08
전필	사회복지개론	88	3	2011.05
전필	인간행동과사회환경	89	3	2011.05
전필	사회복지실천론	78	3	2011.11
전필	사회복지조사론	79	3	2011.11
전필	지역사회복지론	84	3	2011.11
전필	사회복지실천기술론	93	3	2012.05
전필	사회복지정책론	85	3	2012.05
전필	사회복지행정론	86	3	2012.05
전필	사회복지법제	89	3	2012.11
전필	사회복지현장실습	96	3	2012.11
전선	아동복지론	80	3	2011.05
전선	자원봉사론	83	3	2011.05
전선	가족상담및치료	86	3	2011.11
전선	가족복지론	83	3	2012.05
전선	가족생활교육	92	3	2012.11
전선	건강가정론	83	3	2012.11
전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87	3	2013.06
전선	장애인복지론	95	3	2013.06

전선	청소년복지	89	3	2013.06
전선	학교사회사업론	98	3	2013.06
전선	심리학개론	89	3	2013.08
	자격증 취득			
구분	자격증종목및등급	학	·점	취득년월일
	이수기관 : 행정자치부			
일선	행정관리사2급		20	2012.06.29

인정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30	33	54	23	
인정학점총계		140		
평점평균		/4.5		
점수평균		/10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학칙 제91조에 의하여 상기인의 학습과목별 성적을 위와 같이 증명함.

년 월 일

영 남 대 학 교

